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서

제 2023-15 호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시설</td><td colspan="6">시설명 관내 가금농장,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소재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소유자
(관리자)</td><td colspan="3">성명</td><td colspan="3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소</td><td colspan="3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명령의 내용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구분 출입통제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이행장소 '23. 4. 이후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
설정된 방역지역</td><td colspan="2">이행기간
'23. 4. 6. ~
방역지역 해제 시</td><td>대상 두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명령대상</td><td rowspan="2">가축</td><td>축종</td><td>품종</td><td>성별</td><td>연령</td><td>귀표(개체)
번호</td><td>특징</td><td>비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람</td><td colspan="7">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 축산 관련 종사자(백신접종팀, 상하차반, 가축진료인력, 컨설팅 · 인공수정 인력, 동물약품업체 관계자,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, 농장 내 시설공사를 위한 외부인력)</td></tr>
<tr><td>차량</td><td colspan="7">관내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>준수사항</td><td colspan="7">방역지역 내 가금농장(사육시설 50㎡ 초과 농장) 방문 시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.
○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
- 해당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·군·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,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(유선·문자·팩스 등)
-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, 팀원·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·신발 소독을 실시(1회용 덧신 가능)하고 장비·도구·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
-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(관리자)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
○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
- (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) 가축질병 검사·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
- (컨설팅·인공수정 인력,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,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인력) 해당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,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
-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·군·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·신발 소독 실시(1회용 덧신 가능),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(관리자)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·군·구에 당일 제출</td></tr>
</table>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4월 6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 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